

의안번호	2219408
의 퇴 인	조계원의원
회 답 일	2026. 8. 5.
추계번호	26C2854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영상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영상콘텐츠사업자의 기획 지원)	정부는 우수 영상콘텐츠의 기획·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7조(영상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지원)	정부는 다양성·공공성·예술성이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 등을 위하여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8조(2차적 저작물의 기획 및 제작 지원)	정부는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산업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재가공한 2차적저작물을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9조(영상콘텐츠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의 보호)	정부는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1조(영상콘텐츠의 연구 개발 등)	정부는 영상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2조(투자 및 금융 기반 구축)	정부는 영상콘텐츠산업의 투자 및 금융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치평가, 문화산업 보증, 사업단위 자금조달 등의 영상콘텐츠의 고유성에 기반한 투자·금융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3조(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영상콘텐츠의 국제협력 및 영상콘텐츠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4조(다중언어 제작 지원)	정부는 해외 영상콘텐츠 이용자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중언어 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5조(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정부는 영상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및 공동제작 결과물의 국내의 유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6조(공적 개발원조)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상콘텐츠 부문의 공적개발원조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그 밖에 영상콘텐츠 부문의 공적개발원조 및 기술 전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17조(영상 콘텐츠의 보존 등)	정부는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18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산업 유통환경의 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0조(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의무규정 재량규정
16	안 제21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정부는 영상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및 이용자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4조(영상콘텐츠 이용의 격차 해소)	정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영상콘텐츠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용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25조(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	정부는 모든 국민의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 규정 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 대부분의 조문은 기존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조문을 근거로 한 사업의 경우 향후 정책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1】 전부개정안과 기존 법령 비교

연번	전부개정안	현행 법령
1	제5조(영상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정부의 시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제6조(시행계획)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 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6조(영상콘텐츠사업자의 기획 지원) 제7조(영상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지원)	「영상진흥기본법」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3	제8조(2차적저작물의 기획 및 제작 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4	제9조(영상콘텐츠의 전문인력 양성 등)	「영상진흥기본법」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5	제10조(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의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5	제11조(영상콘텐츠의 연구·개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6	제12조(투자 및 금융기반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3조(창업의 활성화 등)
7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4조(다중언어 제작 지원) 제15조(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영상진흥기본법」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8	제17조(영상콘텐츠의 보존 등)	「영상진흥기본법」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9	제18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10	제20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11	제21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12	제24조(영상콘텐츠 이용의 격차 해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13	제25조(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제62조(국제협력)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 개정안의 조문별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는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6조(공적개발원조)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상콘텐츠 부문의 공적개발원조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관련 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사업규모나 사업예산을 현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